
「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」 주요 질의응답 (FAQ)

2024. 2.

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연번	주제	예상 질의내용
1	지원 대상	▪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왜 시행하는 것인가요?
2		▪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3		▪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4		▪ 전기요금 계약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5		▪ 전기구역 사업란 무엇인가요?
6		▪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?
7		▪ 공고일('24.2.15) 직전 폐업하였습니다. 지원이 가능한가요?
8		▪ 개업을 2024년에 하였습니다. 지원이 가능한가요?
9		▪ 사업자가 여러개입니다. 사업자마다 지원이 되나요?
10		▪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11	신청	▪ 신청방식은 어떻게 됩니까?
12		▪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13		▪ 한국전력 고객센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14		▪ 방문 신청도 가능한가요?
15	이의신청	▪ 비대상 통보 받은 사업체의 경우,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16	기타	▪ 사업 안내자료(리플렛)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
17		▪ 콜센터 및 민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?

1**지원 대상****Q1.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왜 시행하는 것인가요?**

- 소상공인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'내수 침체'와 고금리 지속,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'경영비용 증가'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
 - 그간 경제상황을 감안, 전기요금은 약 20개월 간 ('20.7~'22.3) 동결됐으나, '22년 5월부터 1년간은 약 32% (kWh 당 100.7원 → 132.4원) 급등한 바 있으며,
 - 영세 소상공인은 고정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에너지 비용이 많아, 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실정입니다.
- 이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, 정부국회가 뜻을 모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합니다.

Q2.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- ①공고일 기준 **활동 중**이며, ②연 매출액 3,000만원 이하이고 ③**일반용·산업용·교육용·주택용 중 비주거용**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·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 - (활동 사업자) 개업일이 20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 - * 사업공고일('24. 2. 15.)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(매출 규모)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'22년 혹은 '23년이 3천만원 이하**인 사업자입니다. (단, '22년과 '23년 매출액 모두 0원은 지원 제외 대상)

- '22년 또는 '23년 연중 개업 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방식을 적용하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
 - * 연 환산 방식 : $\text{영업 월의 평균 매출액}(\text{매출액} \div \text{영업개월 수}) \times 12$
 - **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(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3항)
 - ** * 매출액 환산시 연중 휴업 하더라도 계속 해서 영업한 것으로 간주

■ 개업일이 '23.11.15., '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

- 옳은 계산 : $(400\text{만원} \div 2\text{개월}) \times 12\text{개월} = 2,400\text{만원}$ → 지원대상 해당
- 잘못된 계산 : $(400\text{만원} \div 47\text{일}) \times 365\text{일} = 3,106\text{만원}$ → 지원대상 비해당
 - * 국세청 간이·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(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)
 - **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

- (전기요금 계약종) 일반용·산업용·농사용·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

<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>

주택용	일반용	교육용
주거용, 아파트, 소규모 사무실 등	공공용, 영업용(오피스텔) 등	학교, 박물관 등
산업용	농사용	가로등
광업용, 공업용(공장) 등	농업용, 어업용	가로등, 보안등

- *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: 통신·기계장비, 사무실,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(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)
- **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파악이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고객센터(123)로 문의

- (업종 및 상시근로자) 제한 없음
- (중복신청 제한) 1인이 다수 사업체 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,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

Q3.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은?

- 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
Q4. 전기요금 계약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-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확인이 어려울 경우, 전기요금 고지(청구)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(123번)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* 단,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<전기요금 고지서 예시>

청구내역		고객사항		사용량사항		사용량비교	
기본 요금	1,600	계약종별	주택용전력	당 월 지 침	.00 당 월		kWh
전력량요금		주거구분	비주거	전 월 지 침	.00 전 월		kWh
인터넷발령할인	-200	정기검침일	매월 11 일	사 용 량	kWh 전년동월		kWh
전기요금계		계기번호					
부가가치세		계기배수	1				
전력기금		계약전력	3 kW				
원단위결제	-9	가구수	1				
당월요금 계		TV대수	1				
TV 수신료	2,500						
		미납내역		전자세금계산서 PRINT			
		미납월	금 액	공 급 자 등 록 번 호		0- - 00	
				공 급 받 는 자 등 록 번 호		****-****	
				공 급 가 액		, 원	
				세 액		, 원	
				작 성 일 자		2019년 03월 24일	
				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			
				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에 따라 나주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등록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. 위 금액을 청구 하였습니다.			
				한국전력공사			

Q5. 구역전기사업자란 뭔가요?

- 구역전기사업자란 생산된 전기를 특정한 공급구역내 아파트·상가 등 전기사용자에게 자체 투자한 배전망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 (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등)
- 구역사업자와 전기요금 계약이 된 경우 고객번호 등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공고문 문의처 참조)

< 구역전기사업자 현황 ('23.12 기준) >

구분	사업자	공급구역	문의처
서울 (5)	대성산업	신도림디큐브시티	☎ 02-2211-0013
	한국지역 난방공사	가락한라APT	☎ 1688-2488
		동남권유통단지	
		상암 2지구	
경기 (3)	고양삼송지구		
	삼천리	광명역세권	☎ 02-3397-8515
부산	부산정관에너지	부산정관지구	☎ 051-722-7900
대구	대성에너지	대구죽곡지구	☎ 053-606-1307
대전	CNCITY에너지 (구)충남도시가스)	대전학하지구	☎ 042-336-5600
충남 (2)	JB(주) (구)충부도시가스)	천안청수지구	☎ 041-620-1417, 1430
		아산탕정지구	
계	7개 사업자	11개 구역	

Q6.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?

-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(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)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Q7. 공고일('24.2.15) 직전 폐업하였습니다.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불가합니다. 「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」은 공고일 기준('24. 2. 15일)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
 - * '24. 2. 16일 폐업자는 지원 받을 수 있음.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폐업일자 확인된 내역만 인정됨

Q8. 개업을 2024년에 하였습니다.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불가합니다.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'23. 12. 31. 이 전인 사업체로 현재 활동 중(휴업은 포함)인 사업체입니다.
- 2024년은 매출액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불가합니다.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'23. 12. 31. 이전(당일포함)인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
 - *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'23.12.31일인 경우 인정, '24.1.1일인 경우 불인정

Q9. 사업자가 여러개입니다. 사업자마다 지원이 되나요?

- 불가합니다. 1인이 다수 사업체 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
 - 한 개인이 운영하는 A, B 사업장을 각각 신청하더라도(법인, 개입 사업자 무관), 개인CI(개인식별코드) 기준 1회만 지원합니다.
 - A, B가 공동 대표일 경우, A, B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번호 기준 1회만 지원합니다.

Q10.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- 직접 계약자는 신청인과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간 직접 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로 별도 서류 없이 검증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는 없으나 사업을 영위 중 실제로 전기를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신청인(소상공인)을 말합니다.
 - 예를 들어, 타인명의 한전계약고지서를 대납중이거나, 집합건물 등에서 관리사무소 관리비 안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, 기타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-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지원대상 검증 및 전기요금 환급을 위한 유형별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.

Q11. 신청방식은 어떻게 됩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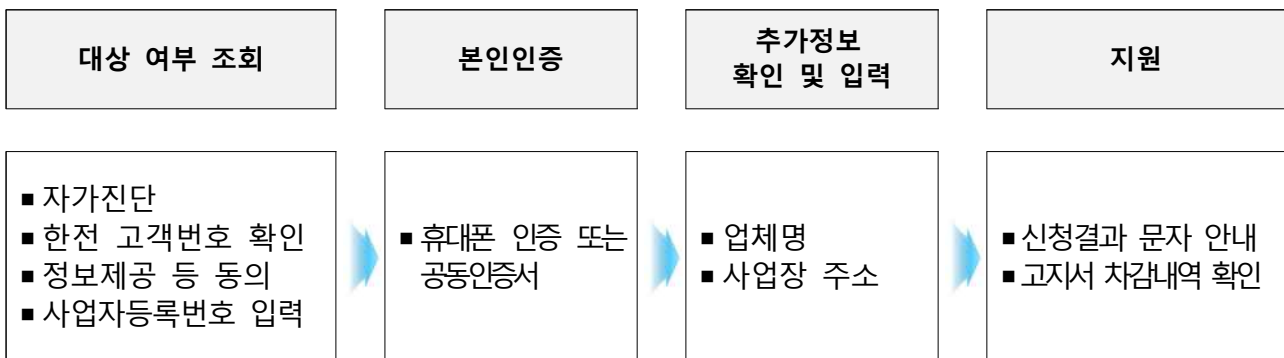
- 직접계약자의 경우 연매출 기준(3,000만원)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전력에 통보하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이 지원됩니다.
- 비계약사용자는 고지서·확인서를 통해 '23~'24년 납부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.

Q12.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

* 포털사이트에서 "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" 검색 또는 주소창에 "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" 입력하면 접속 가능

【온라인 신청 절차】



① (대상여부 조회) "사업자등록번호" 및 "한전 고객번호" 입력

② (본인인증)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, 공동인증서* 활용

*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

③ (신청정보 입력)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(해당자) 업로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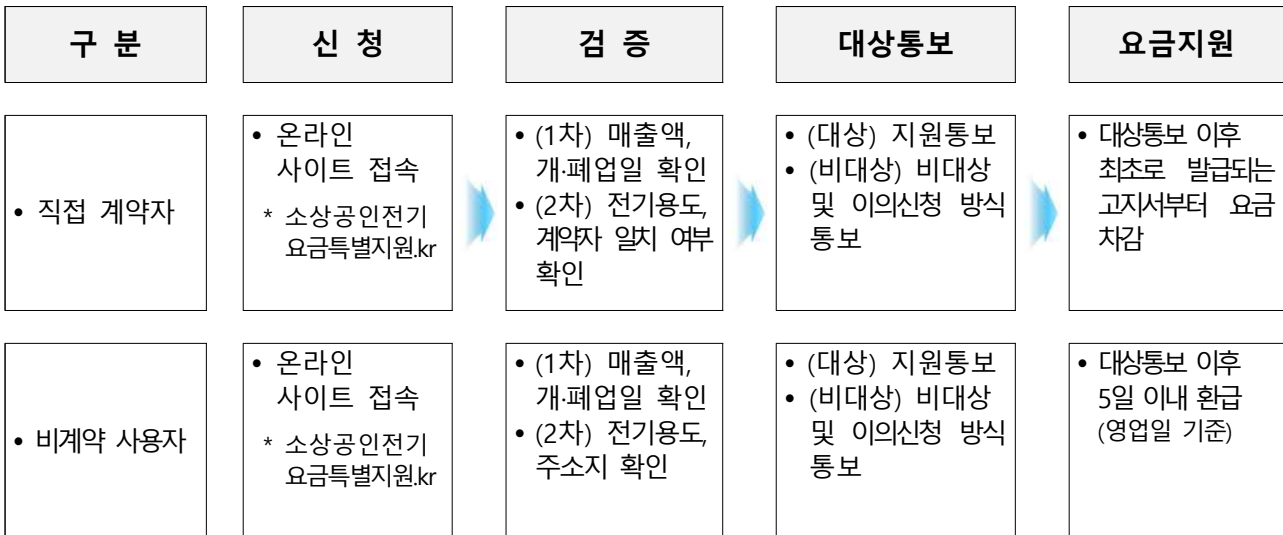
④ (검증 및 요금지원) 지원요건 및 서류 검증 후 요금지원

○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와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진행

구분	분류	내용
유형1	직접 계약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상자 선정 직후 가장 최근에 발행하는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 실시 ■ 청구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,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20만원 차감 ■ 청구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, 전액 지원 후 잔액은 지원 합산금액이 충족 되는 시점까지 익월로 이월
유형2	비계약 사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상자 통지 후 1주일 이내 신청 계좌번호로 전기요금 납부금액 20만원 환급

* 대상자 선정까지는 다소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

【전기요금 지원 절차】



Q13. 한국전력 고객센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
-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, 고객센터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(online.kepco.co.kr) 또는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 ((국번없이)123)하시면 전기요금 고객센터 확인이 가능합니다.

* 단,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

Q14. 방문 신청도 가능한가요?

- 방문 접수는 시행하지 않지만,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시어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접수를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비계약 사용자 신청과 같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, 해당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3 이의신청

Q15. 비대상 통보 받은 사업체의 경우,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요건을 확인·검증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
- 주거용 사업장, 고객번호와 신청자 불일치 등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확인한 사유로 비대상 통보 된 경우 한전(☎123)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문의처(Q17번 문의처 참고)에서 안내 예정입니다.

4 기타

Q16. 사업 안내자료(리플렛)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

- 사업 신청 홈페이지(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 메인화면에서 다운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아울러,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서 홍보물을 수령하고 사업에 대한 안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Q17. 콜센터 및 민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?

-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번호는 '1533-0200'입니다.

구분	문의처	
일반문의	(콜센터)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	☎ 1533-0200 (평일 09 ~ 18시)
	(누리집)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	-
전기요금 및 요금지원, 계약종 관련	(한전) 한국전력 콜센터	☎ 123 (연중무휴)
	(구역전기) 대성에너지	☎ 053-606-1307
	(구역전기) 부산정관에너지	☎ 051-722-7900
	(구역전기) 삼천리	☎ 02-3397-8515
	(구역전기) JB	☎ 041-620-1417, 1430
	(구역전기) CNCITY	☎ 042-336-5600
	(구역전기) 한국지역난방공사	☎ 1688-2488
	(구역전기) 대성산업	☎ 02-2211-0013